

제21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2016. 1. 19.~1. 27.)

일 반 의 안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6 ~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1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안
번호 2016~

제출일자 : 2016. 1.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제한)의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라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통해 일몰제를 도입
 -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 고시된 미집행시설 : 2020년 7월 1일 실효
 - 2000년 7월 1일 이후 결정 고시된 미집행시설 : 20년된 다음날 실효
- 4년 후인 2020년 7월이면 미집행 군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어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성의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도로,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통제가 실효되어 도시의 큰 혼란이 예상됨.
- 따라서, 군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함으로서 군의 재정 규모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하며,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부칙 제16조(실효기산일 경과조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제42조(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제9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2절 3호 1항

3. 보고사항

가. 장기미집행시설의 정의

-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 우는 제외) 군계획시설을 말함.

나. 집행계획 보고 및 권고 등

-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
- 지방의회에서는 90일 이내 해제 권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군계획시설을 해제 결정하고, 해제할 수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의회에 소명
- 지방의회에 보고하였으나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
- 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 구역의 군관리계획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 으로 재검토하여 정비

다. 단계별집행계획

- 계획의 범위 : 거창군 행정구역내 미집행 군계획시설
 - 개소 및 면적 : 479개소, 4,706,831m²
-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2015년 12월 31일 기준)

구 분		결 정	집 행	미집행	미집행율(%)
합계	개 소	1,131	652	479	42.4
	면적(m ²)	30,137,184	25,366,575	4,770,609	15.8
도로	개 소	696	415	281	40.4
	면적(m ²)	10,647,592	8,916,156	1,731,436	16.3
공원	개 소	27	21	6	22.2
	면적(m ²)	815,229	356,694	458,535	56.2
녹지	개 소	33	23	10	30.3
	면적(m ²)	397,123	121,331	275,792	69.4
기타	개 소	375	193	182	48.5
	면적(m ²)	18,277,240	15,972,394	2,304,846	12.6

○ 경과년도별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2015년 12월 31일 기준)

구 분		계	10년미만	10~20년	20년이상	10년이상 비율(%)
합계	개 소	479	193	108	178	59.7
	면적(m ²)	4,770,609	3,189,886	311,385	1,269,338	33.1
도로	개 소	281	18	91	172	93.6
	면적(m ²)	1,731,436	1,052,636	118,322	560,478	39.2
공원	개 소	6	1	2	3	8.3
	면적(m ²)	458,535	11,425	5,420	441,690	97.5
녹지	개 소	10	1	6	3	90.0
	면적(m ²)	275,792	4,942	3,680	267,170	98.2
기타	개 소	182	173	9	-	4.9
	면적(m ²)	2,304,846	2,120,883	183,963	-	8.0

○ 정비계획(안) 총괄

구 분		개 소	비 고
합 계	집 행	246	
	폐 지 (변 경)	211	
도 로	집 행	90	
	폐 지 (변 경)	191	
주 차 장	집 행	-	
	폐 지 (변 경)	6	
공 원	집 행	6	
	폐 지 (변 경)	-	
녹 지	집 행	2	
	폐 지 (변 경)	8	
유 통 업 무 설 비	집 행	1	
	폐 지 (변 경)	-	
문 화 시 설	집 행	1	
	폐 지 (변 경)	-	
하 천	집 행	146	
	폐 지 (변 경)	-	
하 수 도	집 행	-	
	폐 지 (변 경)	6	

주) 지방하천 22개소 제외

○ 집행방식별 사업비 총괄

구 분	개 소	합 계 (억원)	재 정 적			
			국 비	지 방 비		
				소 계	도 비	군 비
합 계	246	4,027	1,617	2,410	104	2,306
도 로	90	2,270	1,028	1,242	65	1,177
공 원	6	305	-	305	-	305
녹 지	2	78	-	78	-	78
유통업무설비	1	130	39	91	39	52
문화시설	1	144	-	144	-	144
하 천	146	1,100	550	550	-	550

○ 단계별 집행계획 사업비 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도 로	공 원	녹 지	유통업 무설비	문화 시설	하 천	
합계	개 소	246	90	6	2	1	1	146	
	사 업 비	4,027	2,270	305	78	130	144	1,100	
1 단계	소계	개 소	57	45	5	-	1	-	6
		사 업 비	982	668	91	-	130	-	93
	2016년	개 소	27	22	1	-	1	-	3
		사 업 비	178	123	18	-	20	-	17
	2017년	개 소	17(12)	11(9)	4	-	-(1)	-	2(2)
		사 업 비	250	121	36	-	55	-	38
	2018년	개 소	13(17)	12(10)	-(4)	-	-(1)	-	1(2)
		사 업 비	554	424	37	-	55	-	38
2-1 단계	소계	개 소	52	45	1	2	-	1	5
		사 업 비	1,100	936	83	14	-	10	57
	2019년	개 소	24(14)	21(9)	1(4)	1	-	-	1(1)
		사 업 비	540	466	39	5	-	-	30
	2020년	개 소	28(17)	24(11)	-(5)	1(1)	-	1	2
		사 업 비	560	470	44	9	-	10	27
2-2 단계	2020년 이후	개 소	137(17)	-(11)	-(3)	-(2)	-	-(1)	137
		사 업 비	1,945	666	131	64	-	134	950

주) ()는 계속 사업

4. 향후 추진계획

- 2016. 01. : 의회 보고
- 2016. 02. :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 2016. 02. 이후 : 군관리계획(재정비) 입안 이후 주민설명회
군계획시설의 존치, 폐지 및 변경 반영

5. 거창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PPT) : 따로 붙임

관 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48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

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여야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정비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시설로서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다만, 정비대상시설에 인접하여 함께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설도 포함할 수 있다.

2. 정비대상시설에 대한 정비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정비대상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대상인 도시·군계획시설로 분류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우선해제대상으로 분류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제외한 정비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존치 필요성과 집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해제대상 또는 조정대상으로 분류할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우선해제대상 또는 해제대상으로 분류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나목에 따라 조정대상으로 분류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수립하여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할 것

③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시장·군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2조의 규정은 제2항의 공청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 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 ③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④ 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제16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